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12 선고 2015나22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12 선고 2015나22864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9. 18 선고 2014가합29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16. 4. 7.

판결 선고 2016. 5. 12.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9. 18. 선고 2014가합29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3. 4. 접수 제10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와 피고가 2014. 3. 14.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동업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D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고,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 1,265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D'(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동업자였던 F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F이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원고 단독명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으로 변경하였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사업자명의 변경은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분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인증서) 중 사실확인서 및 갑 제3호증의 1(위임장)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영진

판사곽병수

판사정재오

별지